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0 선고 2024가단510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8. 접수 제327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8. B와 사이에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간 2020. 11. 19.부터 2025. 11. 19.까지로 하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이 2023. 2. 20.경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주식회사 C에 16,362,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23.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71,610,630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증사고

발생 이후 체결된 점, B는 2022.경부터 세금체납이 있었고, 2023. 2. 28.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일부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달리 확인되지 않고, 그 가액은 320,000,000원 정도인 반면, 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4,562,000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청구채권 43,750,000원,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18,888,870원, 피고에 대한 채무 68,610,630원, 세금체납액 10,285,000원 등 합계액이 위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한바,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23.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도 B이 2021.경부터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급을 독촉하여 오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별지